

## 2019년도 제4회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투자유치)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19년도 제4회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투자유치)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3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임용분야 주요업무
광양만권경제 자 유 구 역 청 (투자유치본부)	투자유치 (화학)	일반임기제 (지방행정6급)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내외 관련분야 기업유치 및 입주 지원</li><li>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프로젝트 수립 추진</li><li>국내외 잠재투자자 발굴 및 마케팅</li><li>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li><li>투자유치 대상기업 재무회계 분석</li></ul>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2.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거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친 사람 또는 면제자)

나.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분야 (근무부서)	자격요건
투자유치 (화학)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li>•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li>•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ul> <p>(관련분야) 일반화학, 화학공학, 기능성화학(염료, 도료, 접착제, 2차전지 전해액, 계면활성제, 농약 등) 분야</p>

### 3. 근거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4. 보수수준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관련)

- 6급(상당): (상한액) 73,583천원 (하한액) 49,031천원

※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분야 관련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나. 시험일정

시험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9. 5. 3.(금)	'19. 5. 14.(화) ~ 5. 17.(금) (09:00~18:00)	서류전형	'19. 5. 22.(수)	'19. 5. 23.(목)
		면접시험	'19. 5. 31.(금)	'19. 6. 3.(월)

※ 합격자 발표: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 게시

※ 면접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별지1~9호(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전라남도청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행정동 8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전라남도청)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는 제출서류와 동봉

## 7.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7,000원

※ 응시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전남도청 1층 농협에서 판매), 우편 접수시는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으로 대체(**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박사학위의 경우,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⑦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추가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 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⑧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1부(필수)**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③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⑨ 주민등록표 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발행)
- ⑩ 자격(면허)증 등 1부(해당자에 한함)
- ⑪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별지 제7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응시자 유의사항》

- ①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②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③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 ④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⑤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기타 사항

- 가. 전라남도인사위원회 및 전라남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
- 라.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한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차.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 061-286-3372)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 용 분 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투자유치(화학)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061-760-5061

## 참고

##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투자유치(화학)	지방행정주사(일반행정)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투자유치(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관련분야 기업 유치 및 입주지원</li> <li>- 기업 투자유치 프로젝트 수립 추진</li> <li>- 국내외 잠재투자자 발굴 및 마케팅</li> <li>-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li> <li>- 투자유치 대상기업 재무회계 분석</li> </ul> </li> </ul>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li> <li><input type="radio"/>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li> <li><input type="radio"/>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li> </ul>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경제, 재무·회계, 기업경영, 관련 분야 업종현황 관련 지식</li> <li><input type="radio"/>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프로세스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li> <li><input type="radio"/> 글로벌 산업동향 및 투자유치 유망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지식</li> </ul>
------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화학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input type="radio"/>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input type="radio"/>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 관련분야 : 일반화학, 화학공학, 기능성화학(염료, 도료, 접착제, 2차전지 전해액, 계면활성제, 농약 등) 분야</p>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체에서 기능성 화학소재 관련 투자유치 실무 경력(2년 이상)</li> </ul> <p>※ 관련학위 : 화학과, 화학공학, 기능성화학<sup>*</sup> 등 화학분야 관련 학위</p> <p>* 기능성 화학 : 기초석유화학 제품을 공급받아 자동차, 선박, 전자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특수기능(염료, 2차전지 전해액 등)을 가진 소재 생산</p>	